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5,000,000	13,350,000
일반회계	397,649,679	11,929,490
특별회계	47,350,321	1,420,510
기타특별회계	47,350,321	1,420,510
상수도 특별회계	20,181,866	605,456
수질개선 특별회계	18,187,813	545,63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2,172	13,265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2,998,100	89,9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48,296	25,449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23,242	18,697
기반시설 특별회계	27	1
주차장 특별회계	4,068,805	122,06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05,064천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173,80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4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